

서울고등법원 2022. 4. 13 선고 2021나2040196 판결 [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2. 4. 13 선고 2021나2040196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9. 30 선고 2018가합528846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한국수자원공사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세종
담당변호사 조현재

피고, 항소인 주식회사 A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
담당변호사 조동섭

변론종결 2022. 3. 16.

판결선고 2022. 4. 13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9. 30. 선고 2018가합528846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2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2. 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7쪽 15행의 “규정하고 있고,”와 “갑 제4호증의”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.

【 이에 따라 피고도 원고의 요청에 대하여 광등 교환에 필요한 부품의 조달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광등 교환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을 뿐, 원고가 국내에서 스스로 부품을 조달하여 광등을 교환할 수 있다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, 】

○ 제1심판결 8쪽 12행과 13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.

【 라) 피고는 이 사건 장비에 부착된 광원의 광등 교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변경협약상 부수적 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변경협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경협약 제4조 제1항 제4호는 ‘협약기간 중

원고가 HSI 측정장치의 성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개선을 요구한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고 비용으로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한다.’고 규정하여 피고의 이 사건 장비 유지보수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, 이 사건 장비의 광원 문제 등이 발생하자 원고는 2014. 10. 14. 피고에게 ‘광원에러로 인하여 추가 연구가 불가능하다.’고 알리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였다. 여기에 이 사건 변경협약의 목적인 공동기술개발을 달성하는 데 이 사건 장비의 정상적인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인 점, 이 사건 장비의 광원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장비의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, 이 사건 장비의 광원 문제와 관련한 피고의 유지보수의무가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.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.】

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다.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동완, 판사 배용준, 판사 정승규